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|  |
|-----|--|
| 의 안 |  |
| 번 호 |  |

제출년월일 : 2015.3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개정하여 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

나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순화 등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15. 1. 30. ~ 2015. 2. 19.

**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****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”로 하고,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환경”이라 함은 “환경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연환경”이라 함은 “자연환경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생활환경”이라 함은 “생활환경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환경오염”이라 함은 “환경오염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환경보전”이라 함은 “환경보전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구환경보전”이라 함은 “지구환경보전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활동의”를 “환경보전 활동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“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 기본계획”을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계획”으로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기본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배제되지”를 “어긋나지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“20인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